법제처	**보도자료**	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

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담당 부서	행정법제 혁신 추진단	배포일시	2021. 6. 1.(화) / 총 3장
담당자	총괄팀장 박종구 사무관 정성희 (044) 200-6741		

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, 6월 1일부터 입법예고

-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구체화하고, 행정 법제의 개선사항 심의하는 '국가행정법제위원회' 신설 -

□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**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**을 **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**한다.

○ 제정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,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**「행정기본법」**(법률 제17979호, 2021. 3. 23. 공포, 9. 24. 시행)**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**을 담고 있다.

□ **총 3개 장, 18개 조문**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 개최 근거 마련 (안 제4조)

○ **인허가의제**와 **관련된 협의의 효율성**을 높이고 **신속한 행정을 지원**하기 위해 **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 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**했다.

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(안 제7조)

○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도,

납부 의무자의 **파산선고로 추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특정한 경우***에는 **행정청이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**할 수 있도록 했다.

* 1.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 및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③ 행정상 강제의 계고(戒告) (안 제8조 및 제9조)

○ 행정상 강제의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접강제 실시 전에 의무자에게 하는 계고에 **미이행한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, 이행 기한 등***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**계고 방법의 일반적 공통 규정을 마련**했다.

* 1. 의무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2. **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**
3. 행정상 의무의 **이행 기한**
4.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(실시할 직접강제의 내용)
5. 이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

④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(안 제10조 및 제12조)

○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**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**했다.

※ 행정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, 통지서 등의 서식은 추후 고시할 예정

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(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

○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**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**하고, **민간 전문가와 법제처장**을 **공동 위원장**으로 했다.

□ **이강섭 처장**은 “제정안에는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**「행정기본법」의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**들이 담겨 있다” 면서,

○ “앞으로 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정뿐만 아니라, **법률 해설서 발간, 행정기관 교육 등**을 통해서 **「행정기본법」**이 **행정 현장에 잘 안착**하고 우리 국민이 **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**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**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**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
○ **국민 누구나** 통합입법예고센터,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**의견을 제출**할 수 있다.

※ 별첨 : 행정기본법 시행령안